

I . 안전확보를 위한 건설관계자의 역할

**한국산업안전공단
건설안전지원국장
김진걸**

목 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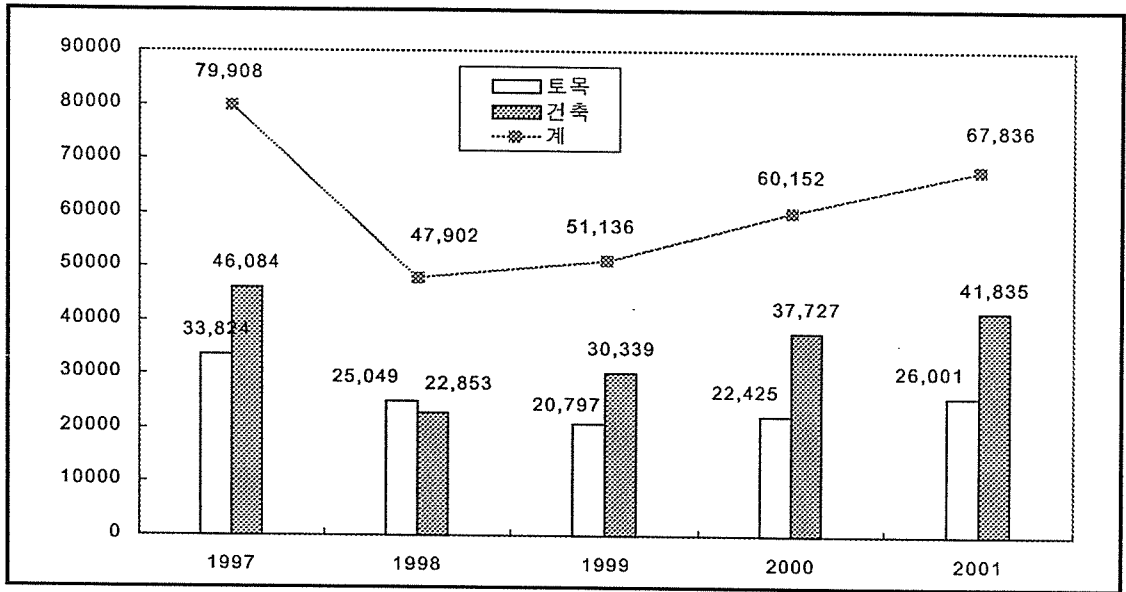
1. 건설동향
2. 건설재해 현황 및 분석
3. 경제적 손실
4. 건설재해예방 주요제도
5. 건설안전의 환경변화
6. 건설관계자의 역할
7. 결 언



1. 건설동향

□ 건설 수주동향(1997 ~ 2001)

○ 공사별(건축, 토목)



(단위 : 십억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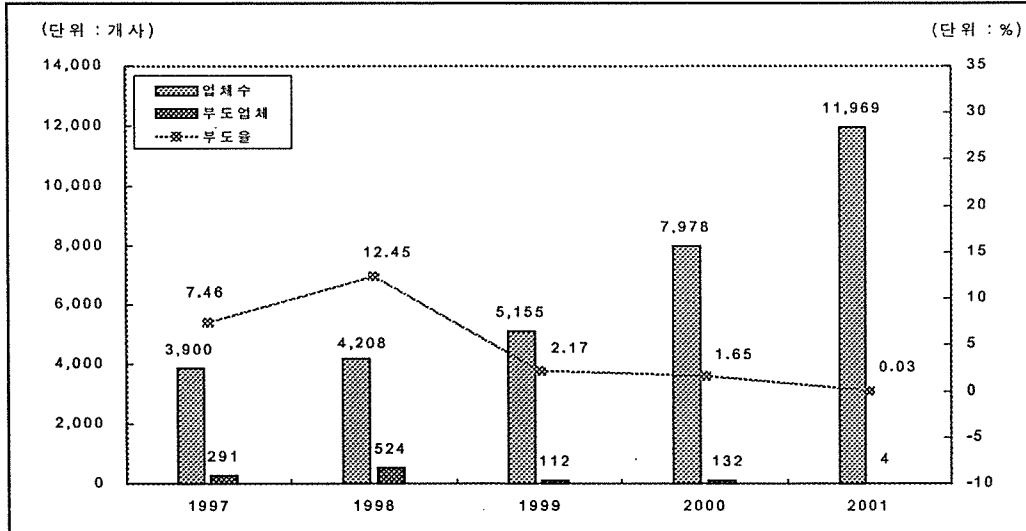
구분 \ 연도	1997	1998	1999	2000	2001
계	79,908	47,902	51,136	60,152	67,836
토 목	33,824	25,049	20,797	22,425	26,001
건 축	46,084	22,853	30,339	37,727	41,835

- 2001년 총 수주액은 67조 8,36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2.8% (7조 6,840억원) 증가
- IMF 직후인 1998년을 최저점으로, 1999년도부터 건설경기 회복에 따라 지속 증가 추세임

※ 2002년 7월말 현재 총 수주액은 42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9조8천억원(30.3%)증가 (공공부문 9.1% 증가: 12조 9,364억원, 민간부문 42.6% 증가: 29조 270억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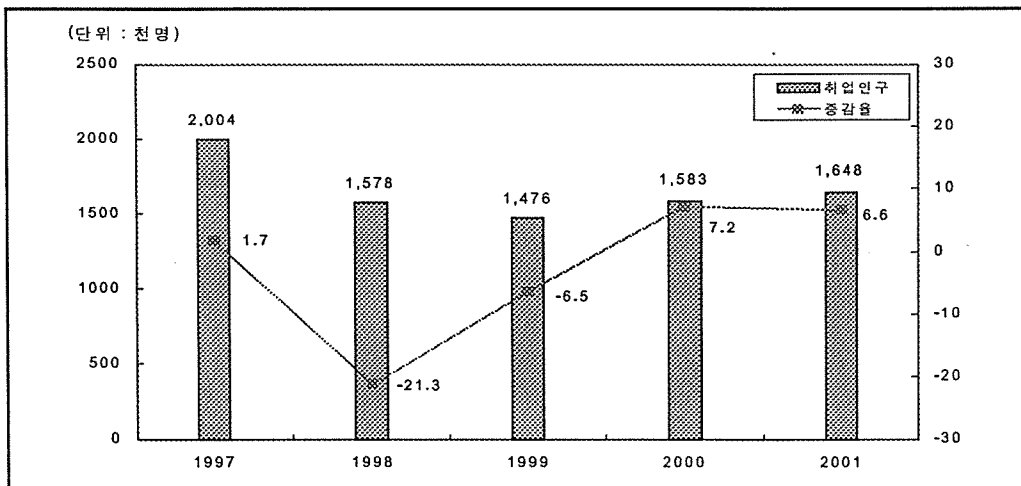
□ 건설업체 부도 및 취업자 동향(1997~2001)

○ 일반건설업체수 및 부도율 현황



- 건설업체수는 '98년 이후 4년동안 급격히 증가 ('98년 4만 → '01년 12만)
 ※ 근린생활시설·상가를 위주로 하는 신생 소규모업체 급증
- 건설업체 부도율은 IMF 이후 현격히 감소, 안정을 보이고 있음

○ 건설 취업자 동향(1997~2001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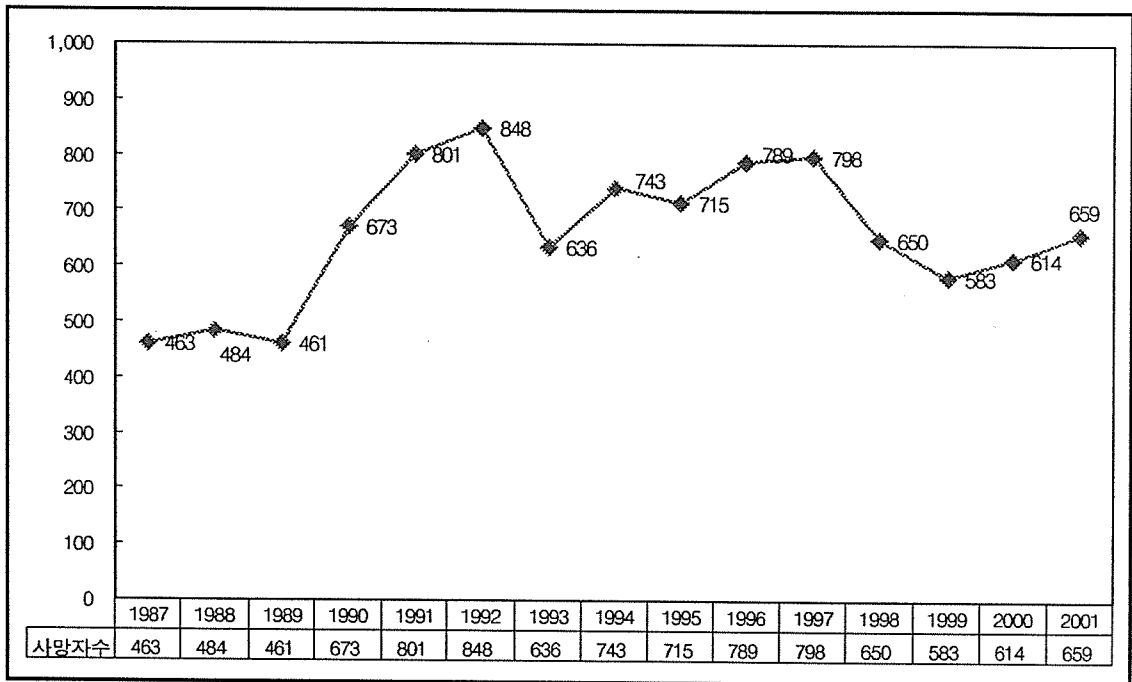


- 2001년 말 기준 건설취업자는 1,687천명으로 전년대비 약 6.6% (10만 4천명) 증가
 ※ 아파트 및 소규모주택의 급증에 기인

2. 건설재해 현황 및 분석

□ 사망자수 발생추이(15년간)

- 건설업 사망자수 증감은 건설공사수주 물량의 증감과 일치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 (건설물량 증가 → 사망자수 증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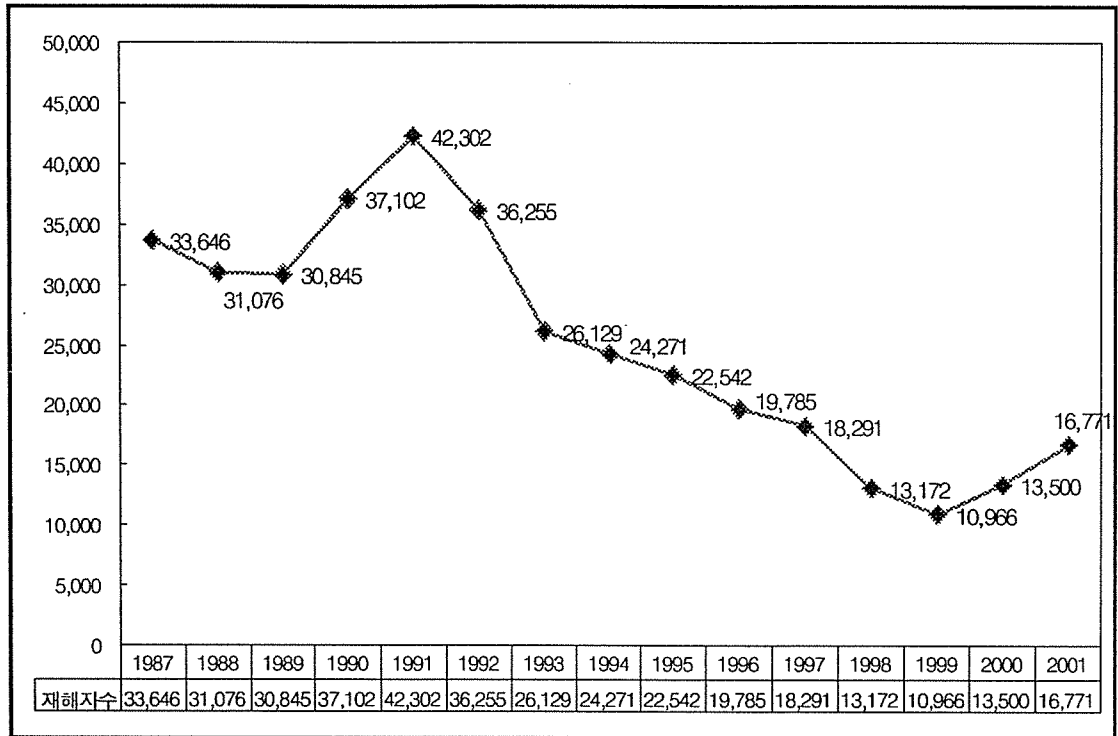


- 주택 200만호 건설 및 지하철공사가 한창이던 '90~'92년 급격히 증가
 - ※ '92년도에 848명으로 최고를 기록
- 주택 200만호 마무리 시점인 '93년도에 급격히 감소(636명)
- 이후, 건설경기 회복으로 '94~'97년 4년동안 증가(800명에 근접)
 - ※ '97년도에 798명으로 800명대에 육박함
- '97년말 IMF 이후 건설경기 악화로 '98년~'99년 급격히 감소
 - ※ '99년도 583명으로 10년 만에 최저치 기록
- '00~'01년 건설경기 회복과 함께 사망자수 다시 급격히 증가

□ 재해자수 발생추이(15년간)

- 사망자와는 달리 재해자수는 건설수주 물량과 대체적으로 무관하게 나타나고 있음

※ 사망자 추이 그래프와는 현격히 다른 양상을 보임



- 주택 200만호 PEAK Time인 3년동안('90~'92) 4만명 내외 기록
- '91년 4만2천명에서 '99년 1만1천명으로 8년만에 1/4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
 - 특히 '93~'97년 5년동안은 건설물량이 증가했음에도 매년 감소
 - ※ 이는 800대 건설업체 재해율 조사발표 이후 대기업의 적극적인 재해예방활동과 산재은폐 영향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
- '97년 이후(IMF 발생) 급격히 감소하였다가, '99년을 최저치로 하여, 건설경기회복으로 '00~'01년 2년동안 급격히 증가
 - ※ 공사금액 10억원 미만의 재해급증에 기인(소규모 주택건설물량 증가영향)
 - ※ 10억원미만 재해점유율 : 2000년 38.7%, 2001년 57.9%

□ 2001년도 건설재해현황

- 2001년도 건설업 재해자는 16,693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23.4%(3,163명) 증가하였고, 사망자는 658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7.2%(44명) 증가함

※ 순수 업무상 사고에 의한 재해비율 : 사망자 84%, 재해자 97%

(단위 : 명)

구분	재해자				사망자			
	계	업무상 사고	업무상 질병	교통사고	계	업무상 사고	업무상 질병	교통사고
2001. 12	16,771	16,225	317	151	659	536	87	35
2000. 12	13,500	13,081	249	170	614	527	57	30
증감	3,163	3,144	68	△19	44	9	30	5
증감율 (%)	23.4	24.0	27.3	△11.2	7.2	1.7	52.6	16.7

※ 2001년도 건설업재해율은 0.69%로 전년도 0.61%보다 13.1% 증가

□ 사망재해 현황

○ 발생형태별 현황

(단위 : 명)

구분	계	추락	감전	붕괴 도괴	낙하 비래	화재 폭발	충돌	전도	협착	유해 화학	업무 질병	교통 사고	기타
'01	659	301	50	33	44	10	14	15	20	3	87	35	46
'00	614	248	64	47	40	18	19	16	14	4	57	30	57
점유율	100%	43.2	9.0	6.3	6.6	2.2	2.6	2.4	2.7	0.6	11.3	5.1	8.1

- 전체 건설사망 재해자중 추락으로 인한 사망자가 매년 40% 이상 점유

※ 2000년 40.4%, 2001년 45.7% 점유

○ 공사규모별 현황

- 전년대비 공사금액 10억 미만에서 재해자 급증(38.7% → 57.9%)

구 분	재해자수		사망자수	
	2001년도 (점유율)	2000년도 (점유율)	2001년도 (점유율)	2000년도 (점유율)
계	16,771	13,500	659	614
3억원 미만	4,043 (24.2)	1,921 (14.2)	162 (24.6)	81 (13.2)
3억~10억원 미만	5,627 (33.7)	3,309 (24.5)	157 (23.9)	121 (19.7)
10억~20억원 미만	2,628 (15.7)	3,248 (24.1)	89 (13.5)	122 (19.9)
20억원 이상	4,395 (26.3)	5,022 (37.2)	250 (38.0)	290 (47.2)

※ 3억 미만 : 사망자 24.6%, 재해자 24.2% (전년도 각각 13.2%, 14.2%)

※ 10억 미만 : 사망자 48.5%, 재해자 57.9% (전년도 각각 32.9%, 38.7%)

□ 추락사망재해 분석(공단조사대상/기인물별)

기인물		계	1999년도	2000년도	2001년도	비 고
계		644	203	191	250	
3 대 기 인 물	소 계	366 (56.8%)	123 (60.6%)	116 (60.7%)	127 (50.8%)	3대 추락재해 기인물
	개구부	158	60	51	47	
	작업발판	155	38	53	64	
	비 계	53	25	12	16	
철구조물		19	7	3	9	
철 탑		10	5	2	3	
사다리		21	5	4	12	
철골빔		16	4	8	4	
전 주		15	4	3	8	
지 붕		13	4	5	4	
로우프		14	4	4	6	
건축구조물		14	2	4	8	
곤도라		10	-	4	6	
기 타		148	47	38	63	

※ 3대 추락재해 기인물(개구부, 작업발판, 비계)에서 57% 발생

□ 2002년 7월 재해발생 현황

○ 전산업 재해현황

(단위 : 명)

구 분	재 해 자				사 망 자			
	계	업무상 사 고	업무상 질 병	교통사고	계	업무상 사 고	업무상 질 병	교통사고
2002. 7	45,978	41,468	3,291	1,218	1,481	652	742	87
2001. 7	44,481	39,509	3,092	1,880	1,398	606	662	130
증 감	1,497	1,960	199	1,880	83	46	80	△43
증감율 (%)	3.37	4.96	6.44	△35.21	5.94	7.59	12.1	△33.1

- 재해자는 전년동기 대비 3.37%(1,497명)가 증가, 사망자는 5.94% (83명)가 증가

○ 건설업 재해현황

(단위 : 명)

구 분	재 해 자				사 망 자			
	계	업무상 사 고	업무상 질 병	교통사고	계	업무상 사 고	업무상 질 병	교통사고
2002. 7	10,698	10,468	172	58	336	266	63	7
2001. 7	8,135	7,845	187	103	307	248	47	12
증 감	2,563	2,623	△15	△45	29	18	16	△5
증감율 (%)	31.5	33.4	△8.0	△43.7	9.5	7.2	34.0	△41.7

- 재해자는 31.5%(2,563명)가 증가, 또한 사망자도 9.5%(29명)의 증가

□ 재해증가 주요원인

○ 건설물량 증가

- '02. 7월 현재 건설수주액이 42조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하여 9조7천5백억원(30.3%) 증가

· 공공부문은 9.1% 증가(11조 8,539억→12조 9,364억)

· 민간부문은 42.6% 증가(20조 3,592억→29조 270억)

- 이에 따라 금년 7월말 현재 산재보험 적용 건설근로자수는 2,486,629명으로 전년동기(1,969,551명)에 비하여 517,078명(26.3%) 증가

※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금년 7월 중 건설취업자수는 179만8천명으로 전년동월 162만5천보다 17만3천명(10.6%) 증가하였음

○ 고령근로자 등 증가

- 건설물량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에 취약한 미숙련, 고령, 여성인력이 건설현장으로 대거 유입되어 이들의 재해위험성 한층 증대

※ '02. 6월 현재 건설업취업자 중 50세 이상 고령자는 397천명으로 전년동기(376천명)에 비하여 18.3%(69천명) 증가

※ '02. 6월 현재 건설업 여성근로자는 157천명으로 전년동기(136천명)에 비하여 15.2%(21천명) 증가

○ 소규모 건설현장의 증가

- 금년 7월말 현재 공사금액 3억원 미만의 영세현장이 62,023개소로 전년동기에 비하여 27,373개소(79.0%)나 증가하는 등
- 안전관리능력이 취약한 소규모 건설현장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이들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재해가 많이 발생

※ [표 5] 공사규모별 사업장 분포현황

(단위 : 개소)

구 분	'02. 7	'01. 7	증감(증감률)
계	147,123	100,999	46,124(53.2%)
3억원 미만	62,023	34,650	27,373(79.0%)
3억원~20억원 미만	73,416	55,058	18,358(33.3%)
20억원~100억원 미만	8,263	8,343	△80(△0.96%)
100억원 이상	3,421	2,948	473(16.0%)

※ 산재보험 적용 건설현장수이며, 근로자수는 3억원은 5인, 20억원은 30인, 100억원은 100인을 각각 적용

○ 노·사의 안전의식 미흡

- '99년 이후 건설업이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건설업체가 난립, 과당경쟁으로 인한 채산성 악화로 안전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

※ '01년 건설수주액은 68조원으로 '98년 48조원에 비해 1.42배 증가에 그친 반면 일반 건설업체수는 11,961개소로 '98년 4,208개소에 비해 2.84배나 증가

- 건설경기 활성화에 따른 인력난으로 사업주의 지도에 잘 따르지 않는 등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미흡
- 또한, 그간 행정규제완화로 건설안전관리자수가 대폭 감소하는 등으로 사업장 안전관리체제 약화 및 사업주 안전의식 미흡 초래

※ 건설 안전관리자수 : '96/6,607명 → '01/4,435명 [△49.0%(2,172명)]

3. 경제적 손실

- 설비의 대형화, 신기술, 신공법 도입의 적용이 가속화됨에 따라 산업재해의 피해규모도 점증하여 2000년도의 경제적 총 손실액이 7조 2천8백억원으로
 - 이는 100억원 공사규모의 공장 728개를 건설할 수 있는 엄청난 금액으로 국민 총 생산액의 1.8%에 해당함
- 건설업종만의 경우에도 손실액이 2조3천9백5십억원으로 전산업 총 손실비용의 32.9%를 점유하여
 - 건설업의 재해강도가 어느 타산업보다도 높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음

※ 건설재해로 인한 직·간접 손실비용

(단위 : 억원)

구 분	'96	'97	'98	'99	2000
계 (전년대비 증감율)	26,940 (24.3)	31,542 (17.1)	29,180 (-7.5)	22,640 (-22.4)	23,955 (5.8)
직접손실비용	5,388	6,308	5,836	4,528	4,791
간접손실비용	21,552	25,234	23,344	18,112	19,164
전산업대비 점유율(%)	39.8	40.5	40.2	35.4	32.9

- 특히 건설현장에서 사망재해 1명 발생시 총 경제적 손실비용은 약 3억원으로 추정
 - 이는 산재보상금(약 1억/건)외에 회사가 추가 부담하는 금액 2억원으로서 직접손실비용 1억 천만원과 간접손실비용 9천만원임

※ 사망재해 1건당 직·간접 손실비용 추정

(SK 건설자료)

구 분	내 역	세 부 내 역	금액 (원)
1. 직접손실비용	1) 유족보상관계비용	산재외 추가합의금	29,916,000
	2) 산재보험료	산재보험료 증감액	55,786,000
	3) 사고수습비용	사고처리 제반 비용	28,283,000
소 계			113,985,000
2. 간접손실비용	1) 공사중단 및 작업 능률 저하에 따른 손실	공사중단 손실	8,219,000
		공사지연에 따른 추가 임금 부담	23,330,000
		작업효율 저하에 따른 손실	5,034,000
		작업에 따른 공기 연장 임금 부담	14,289,000
		계	50,873,000
	2) P.Q 점수 감점으로 인한 손실	입찰경쟁력 악화에 따른 손실	35,350,000
	3) 기 타	회사 이미지 및 기업 신뢰도 저하	?
소 계			86,223,000
총 계			200,208,000

4. 건설재해예방 주요제도

□ 800대 건설업체 재해율 조사 발표

- 건설업체의 전국 건설현장에서 1년간 발생한 총 재해자 수와 총 공사 실적액을 조사하여 재해율을 계산, 매년 6월말 업체별 재해율 순위 발표
 - 조사대상 : 도급순위 800대 일반건설업체
 - 재해율 순위가 상위 10% 이내 업체는 1년간 지도·감독 면제
 - 환산 재해율 순위가 하위 10% 이내인 업체는 특별 감독
 - 일정규모 업체중 최근 3년간 환산재해율이 평균 환산재해율 이하인 업체 중 자율안전관리업체로 지정된 업체는 지정기간(1년)동안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 자율심사 및 확인 검사

□ P.Q 심사시 가·감점제도 도입·운영

(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: 회비예규 2200.04-149-11)

- 정부공사 P.Q심사시 업체별 재해실적을 신인도 평가에 반영토록 발주기관에 통보하여 1년간 가·감점(±2)을 부여
 - P.Q심사기준 신인도평가 ±3점 배점

- 재해율 : ±2점	- 안전관리비 : -1점
· 평균재해율 0.4배이하 : +2	· 과태료 처분 : -0.5
· 평균재해율 0.7배이하 : +1	· 과태료 처분 2회 이상 : -1
· 평균재해율 1.0배이하 : +0.5	- 환경관련 벌점 : -1점
· 평균재해율 1.5배이하 : -0.5	· 과징금 : -0.5
· 평균재해율 2배이하 : -1.0	· 벌 금 : -1
· 평균재해율 2배 초과 : -2.0	- 부실벌점 : -3점

□ 자율안전관리업체 지정 제도

- 도급순위 300위 이내업체 중 최근 3년간 재해율 우수업체에 대하여는 1년 동안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 심사·확인검사 면제
- 지정업체 현황 : '00년 66개, '01년 70개사, '02년 78개사

□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제도

- 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 현장에 대하여는 직접 공사비의 일정 요율을 안전관리비로서 별도 계상하여 집행토록 함

□ 중대재해발생 건설업체에 대한 제재(건설법 제82조)

- 근로자가 동시에 3명 이상 사망하는 중대재해발생 사업주에게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

사 망 자 수	과 징 금	영 업 정 지
3 ~ 5명	2,000만원	2월
6 ~ 9명	3,000만원	3월
10명 이상	4,000만원	4월

□ 산재보상 개별 요율제 적용(산재보상보험법 제64조)

- 건설업체별 재해발생 정도에 따라 기본보험료의 ±50%까지 증·감
※ 납부보험료에 대한 급여액의 비율 75/100를 기준하여 차등 적용

□ 도급한도액 결정시 감액(건설법 시행규칙 제23조)

- 업체별 책정되는 도급한도액 산출시 평균재해율 이상인 업체에 대하여 최근 2년간 공사 실적액의 최고 5%를 감액

5. 건설안전의 환경 변화

□ 기업활동 및 사업장에 대한 정부규제의 대폭 완화

- 효율성 증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부분 선진경제국가에서는 민간부문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규제를 크게 감축해가고 있으며

※ 미국, 영국 등은 이미 1980년대부터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과 민간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규제가 자국 기업의 생산효율성과 해외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규정하고, 대대적인 탈 규제정책(Deregulation)을 펴오고 있음

- 정부규제를 경제적 효율성을 기준으로 심사하는 규제심사제도를 채택하고 있음
 - 즉 정부규제는 규제조치로서 얻어지는 사회적 편익이 규제조치로 초래되는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한하여 도입, 그 입증책임은 규제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맡음
- 우리나라의 경우도 규제완화를 통한 경제적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기업활동과 사업장에 대한 정부규제가 대폭 완화되었으며 안전보건분야도 예외가 아님

□ 산업구조조정 및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재해요인 증가

- 산업현장의 구조조정에 따른 환경변화로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

- 최근 건설경기의 대폭적인 증가에 의해 미숙련 근로자 및 노령, 제3국 근로자가 현장에 투입됨으로서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이 완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
- 또한, 안전보건에 대한 투자가 원활치 못할 뿐 아니라 안전보건 관리 요원 및 조직의 감축으로 자율안전관리체제가 와해되고 있음

□ 안전보건기준의 국제적 표준화 및 의무적 제도화

- OECD, ILO, EU 등 세계경제기구가 주도하는 산업안전기준의 국제적 표준화 경향 및 각 국에 대한 제도화 요구 증대
 - 세계무역기구(WTO)의 무역기술장벽협정(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)에서는 가능한 표준화 된 국제적 기준을 사용토록 권고
 - 국가별 안전보건, 품질, 환경보호를 위하여 국가적 기준을 사용토록 권고
 - ILO가 2001년 6월에 안전보건경영시스템(OSHMS)을 지침으로 확정 하여 국가별 특성에 맞게 운영토록 권고
 - 또한 유럽국가에서는 민간차원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(OSHMS 18001)제정 · 보급중임
- 국내에서는 안전공단에서 건설업 KOSHA 2000 안전보건경영 Program를 개발, 2001. 7월부터 적용 · 보급하여 2002. 4월 1호 인증사 탄생

6. 건설관계자의 역할

□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

- 안전을 기업경영과 접목시켜 자체적으로 사업주의 안전경영 목표, 산재예방 투자계획, 현장 안전관리 추진방안을 포함한 자율안전 경영기법 도입·운영

□ 안전관리 조직 체계의 재정립

- 현장 안전관리자는 혼자서 모든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, 주로 안전관리 활동과 관련된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소장을 보좌하도록 규정
 -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관리는 직접공사를 수행하는 협력업체 현장 소장 및 담당기사를 비롯한 공사 실무자가 수행하여야 하므로 이들에 대한 안전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부여하고 인사고과 등에 적극 반영

□ 안전관리협의체 구성·운영 및 협력업체 적극 지원

-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모 기업을 중심으로 한 협력업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협의체 구성 운영 및 협력업체 적극 지원

□ 신규 근로자 안전교육 강화 및 관리 철저

- 전체 재해자의 약 49%가 6개월 미만 신규근로자이므로 이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

※ 산안법 제31조에는 신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『채용시 안전보건교육』을 의무화하고 있음

- 또한 최근에는 뇌·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재해가 빈발하여 산업재해 증가요소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시에는

- 법적으로 부과되어 있는 『채용시 건강진단』을 반드시 실시

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철저

- 건설업의 경우는 『산업안전보건관리비』를 발주자가 공사금액의 일정비율로 지급해 주도록 법제화하고 있으므로 이를 단순한 지출이나 이윤으로 간주할 것이 아니라,

- 적절한 사용으로서 몇 배 이상의 경제적 손실비용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투자

□ 무리한 공기단축 지양

- 건설공사에 있어 적정공기는 공사목적물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이고 작업수행 과정에서의 근로자 안전확보를 위하여 무엇보다 중요

- 무리한 공기 단축은 작업과정에서 안전한 시설을 갖춘 후 작업하는 것이 곤란하여, 근로자들이 위험요인에 그대로 노출된 상태로 작업하게 됨에 따라 사고 빈발

□ 근로자가 참여하는 산재예방활동 강화

○ 산업재해예방을 위해서는 노·사간 협력체제의 구축이 우선

- 근로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부여 등 자율안전 관리 Program 활성화 추진
- 안전활동 모범근로자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과 아울러 안전수칙을 위반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경고 및 현장 근로 배제

□ 『건설업 11대 기본수칙 지키기』 실천운동 적극 전개

- 금년에는 위험 6개 업종에 대하여 업종별 11대 기본수칙을 제정하여 보급, 따라서 건설업 11대 기본수칙 지키기 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

건설업 11대 기본수칙

- 작업전 안전점검, 작업중 정리정돈
- 작업장 안전통로 확보
- 안전화, 안전모, 안전대 지급·착용
- 전기기계·기구에 누전차단기 설치
- 둥근톱, 용접기 등에 방호장치
- 중량물 낙하 위험구역 내 접근금지
- 추락, 낙하방지용 안전방망 설치
- 안전난간, 개구부 덮개 설치
- 용접시 인화성, 폭발성 물질 격리
- 밀폐공간 작업전 산소농도 측정
- 작업 후 정리정돈

- 현수막 또는 간판을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

7. 결 언

- 산업재해는 『개인적 측면』에서는 신체적 손상과 정신적 고통은 물론 일시 또는 영구적 노동력 상실로 본인과 가족의 생계유지를 어렵게 하고
 - 『기업의 측면』에서 볼 때는 막대한 투자로 양성된 기능인력의 손실과 생산성 저하 등으로 기업경영을 악화시키며, 특히 대형사고가 발생한 기업의 경우 기업이미지에 막대한 손상을 입게 되고 이로 인한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됨
 - 『사회적 측면』으로는 신체 장애인 또는 재해자의 유족들이 계속 누중됨으로서 이들의 생계안정 문제 등 사회적 불안 요소로 작용하게 됨
- 따라서 21세기 국가발전 전략인 『세계화』를 지향하고 경제규모와 국제적 위상에 걸 맞는 진정한 의미의 선진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는 반드시 추방해야 할 우선적인 과제이므로
 - 세계적 조류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, 근로자의 생명보호 건강유지 증진과 기업의 이윤 획득이 일체라는 사실을 인식하여 안전보건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현장 안전활동을 추진하기 바람.

<참고>

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('02. 7. 22)

주요 개정내용

사용기준

- 공사의 특성상 당해공사의 공사감독자(감리자 포함) 또는 재해 예방 전문지도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목별 사용기준한도의 50% 범위 내에서 이를 초과하여 사용 가능
- 상기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내역에 있다 하더라도 공사설계 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안전관리비로 사용 불가

항목별 사용내역 중 추가사항

- 인건비
 -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과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의 퇴직급여 총당금을 말함
 - 안전보조원의 인건비는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안전순찰 등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자인 경우
- 안전시설비
 - 수직보호망 시설

- 가설전선의 피복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가설전선 거치대 또는 보호 덮개 등 시설
- 리프트의 자동운전장치 비용
-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제빙 또는 제설비용
- 기계 장비 등의 진동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설비
- 안전·보건시설의 구입·설치·유지·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 외 장비 사용료 등 제비용
- 안전시설 해체에 소요되는 인건비 외 장비사용료 등 제비용
- 타 현장에서 전용하는 안전시설의 운반비용

○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

- 안전관리자 전용 컴퓨터, 프린트 등 업무용 기기
- 발목조임대(각반)

○ 사업장 안전진단비 등

- 고소작업장 강풍여부 측정용 풍속계

○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

- 현장 내 안전보건교육장 설치비용 중 대지구입비용 제외

○ 근로자의 건강관리비

- 안전관리비 총액의 20% 이하(10%→20%)
-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
 - ※ 국민건강보험에 의해 실시되는 비용 제외

- 의사, 간호사 등의 근로자 건강상담 교육, 건강관리지도 등에 소요되는 비용
- 작업 중 흡한, 흡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 비용
 - ※ 숙사 또는 현장사무소내의 휴게시설 제외
- 근로자 혈압측정용 혈압계

장기간 계속 계약공사에 있어서는 총 공사금액에 의해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기준으로 사용

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대가 및 횟수기준

공사금액	구분	기술지도대가	기술지도횟수
40억원 미만		1회당 155,000원	공사기간중 월 1회
40억~100억원 미만		1회당 209,000원	
100억~150억원 미만		1회당 246,000원	